

제 호

검 정 증 명 서

품 명

검사일자

유효기간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을 거친 교정용품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

직인

< 비 고 >

1. 검정증명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.
2. 교정용품의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검정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.